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구별수협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근거 마련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07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구별수협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근거 마련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7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제안자: 임호선 의원 등 13인
2. 제안일: 2026. 2. 5.
3. 회부일: 2026.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Ⅲ. 검토의견

1. 지구별수협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구별수협 등 단위 조합에도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조합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3조의4(조합내부통제기준 등) ① 지구별수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구별수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조합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	③ <u>조합준법감시인은 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제5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의 직원 중에서 조합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u>조합내부통제기준과 조합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8조(준용규정) ----- ----- ----- ----- -----제53조의3, 제53조의4----- ----- ----- ----- ----- ----- ----- ----- ----- ----- ----- ----- ----- ----- ----- ----- ----- -----
--	---

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 제

_____.

제113조(준용규정)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	-----
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	-----
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	-----
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	-----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	-----
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	-----
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	-----
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
“제1항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	-----
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	-----
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	-----
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	-----
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	-----
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	-----
1항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
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	-----
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	-----
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20	-----
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	-----
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	-----
동조합등기부”로 본다.	-----.

□ 최근 6년간(2020년~2026년) 단위조합(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함)의 횡령·배임 사고건수는 36건, 평균사고액은 건당 5억 1,200만원으로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협 단위조합 횡령·배임 사고 발생 현황('20~'25.11월)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1월	합 계
사고건수	7	7	3	4	10	6	36
사고액	2,028	3,438	399	2,778	4,021	5,781	18,445
평균사고액	290	491	133	695	402	964	512

* 주요 사고 : '21년 서산수협(기자재 대금 및 면세유류 대금 횡령 30억원), '23년 부안수협(부당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26억원), '24년 한림수협(고객 공제금, 조합 경비 등 횡령 16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 수협 단위조합 횡령 사고 현황('11~'25.11월)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사고건수	사고금액	주요 사고내용
합계	94	36,236	
2011	1	6	인지대금 횡령
2012	4	648	대출금, 현금시재 횡령 등
2013	2	9,187	떨치수매대금, 고객예탁금 횡령
2014	7	1,353	고객예탁금, 대출금 횡령 등
2015	19	4,518	대출금, 판매대금, 구매사업 미수금 횡령 등
2016	9	526	대출금, 현금시재, 예탁금 횡령 등

연도별	사고건수	사고금액	주요 사고내용
2017	9	4,421	유류판매대금, 대출금, 위판미수금 횡령 등
2018	3	81	경매수산물 유용, 업무상 횡령 등
2019	8	1,083	보험환급금, 고객예탁금, 경비집행 횡령 등
2020	6	2,028	현금시재, 고객예탁금 횡령 등
2021	5	3,326	기자재 및 면세유류대금 횡령, 시재금 횡령 등
2022	3	399	시재금, 위판대금 횡령 등
2023	3	138	면세유류, 고객자금 횡령 등
2024	9	2,741	천일염 판매대금, 고객 공제금 횡령 등
2025.11월	6	5,781	시재금, 예탁금 횡령 등

자료: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감사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중앙회는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조합을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에 위탁한 단위조합에 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 관련 근거 >

법령	조	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법령	조	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¹⁾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69조(감독)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감독원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 위탁한다. 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수협중앙회는 단위조합에 대해 정기·수시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은 줄어들고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있지 않아 단위조합의 내부통제를 통한 자정 노력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수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 실시 현황 >

구 분	‘18	‘19	‘20	‘21	‘22	‘23	‘24	‘25
계	82	165	143	135	152	135	149	187
정기감사	46	45	46	45	46	45	46	45
수시감사	36	120	97	66	106	90	103	142

자료: 수협중앙회

□ 현행법²⁾은 중앙회가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내부 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으로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 중앙회는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실장 1인을 중심으로 준법감시, 반부패·청렴,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현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총 1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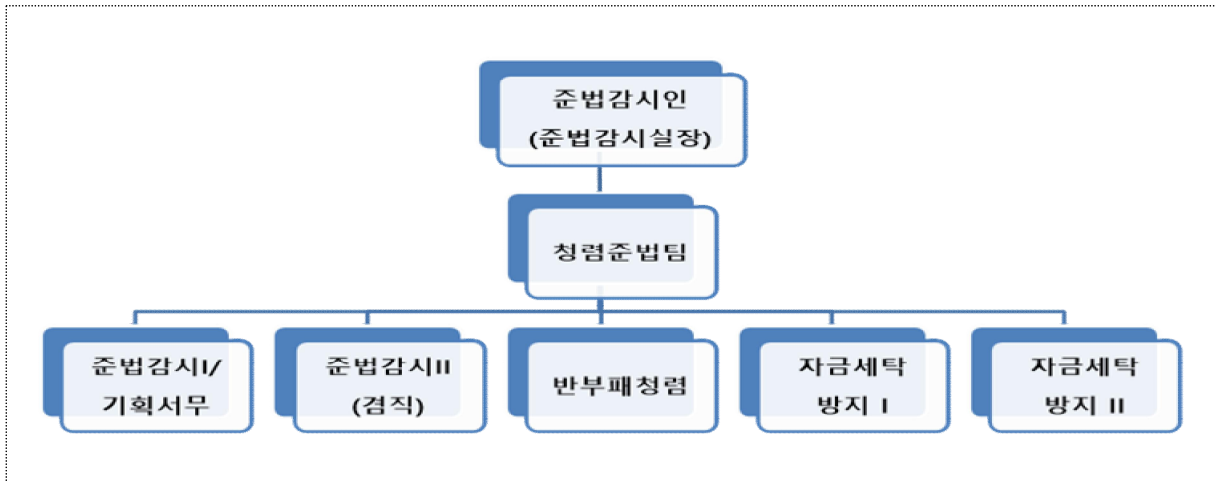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협중앙회 준법감시 체계 >



자료: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 업무현황 >

구 분	직 급	주요 분장업무
준법감시실장	별 급 1명	• 준법감시실 업무 총괄
팀장	1 급 1명	• 준법감시 및 반부패·자금세탁 업무 세부사항 총괄
서무 기획	2 급 1명 3 급 1명	•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시정 •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법규준수와 관련한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외부 감독기관 및 본회 감사부서와의 협조·지원 •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관리 • 내부통제 기준 운영을 위한 제반 부수업무 • 준법감시, 법규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준법감시 사전검토(경제, 공제) • 관련법령 조사, 연구, 법률지도 • 기타 회장 및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규정 제정·개정·폐지(안) 사전 검토 및 조정
반부패 청렴	2 급 1명 3 급 1명	• 내부통제 기준 운영을 위한 제반 부수업무 • 준법감시 사전검토 (일반, 지도, 상호) • 제규정 제정·개정·폐지(안) 사전 검토 및 조정 • 반부패, 청렴정책 업무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업무

구 분	직 급	주요 분장업무
자금세탁 방지 (중앙회)	2급 1명 3급 1명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제규정 제·개정 및 관리(중앙회)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교육·지도 및 시스템 운용(중앙회)
자금세탁 방지 (회원조합)	2급 1명 3급 1명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제규정 제·개정 및 관리(회원조합)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교육·지도 및 시스템 운용(회원조합)

자료: 해양수산부

□ ‘내부통제’³⁾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구별조합 등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위조합의 자체적인 이행 절차인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사 등 감독 기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3) 「수협중앙회 내부통제 규약」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본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
3. “준법감시”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활동을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있는데, 단위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지역농협의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위조합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단위조합의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 지역농협의 내부통제기준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사항 >

개 정 내 용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200573), 임미애의원 대표발의(2206523), 안호영의원 대표발의(2206528), 이원택의원 대표발의(2207694)를 통합·조정한 대안 (2026.03.10. 공포, 2026.9.11. 시행 예정).

□ 수협의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단위조합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수협중앙회는 조합 감사업무와의 일부 중복성, 준법 감시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첫째, 수협중앙회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감사 제도는 둘 다 일종의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부 중복된다는 입장임.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반면, 감사는 업무감사권의 일환으로서 내부통제체제가 유효하게 구축 및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독·검사 및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내부통제 자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관련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설명임.

< 준법감시인제도와 감사제도 비교 >

구분	준법감시인	감사(감사위원회)
성격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 (사전적 규율)	경영진 외부의 업무감시 (사후적 규율)
목적	법규 준수 여부의 사전 확인	경영진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법성 사후 확인

자료: 수협중앙회

다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영진이 스스로 사전 예방적으로 효율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반면,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사후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구분되므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실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단위조합의 준법감시 조직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 소요 비용 및 인력 운용 문제 등으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현실상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임.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중앙회 준법감시 조직운영비는 2025년 기준 22억 4,400만원⁵⁾이 소요되었으며, 단위조합 준법감시 전담조직 도입 시 연간 총 137억원(조합당 약 1.5억원)⁶⁾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조합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임.

- 셋째, 지역농협의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에 따른 수협 단위조합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농협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상호금융 사업 인프라와 조합원 확보를 통해 준법감시인 전담 인력을 갖추고 운영할 여력이 있을 수 있으나, 수협은 조합원 수와 상호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측면⁷⁾이 있고 규모가 영세한 조합에게 의무적으로

5) *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 1,883백만원 / 경비 : 361백만원
(별급 1명, 1급 2명, 2급 6명, 3급 3명, 4급 1명)

6) 회원조합 91개소별 준법감시인 포함 전담인력 2명(1급 1명, 3급 1명) 가정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다른 업무와 겸직은 곤란한 이유로 준법감시인은 전담인력 채용 가정)

준법감시인을 도입하도록 할 경우 조합의 경영 부담과 함께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⁸⁾을 통해 대형조합(신용사업 총자산 1조원 이상⁹⁾)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자율규제¹⁰⁾를 도입하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26년 내 가이드라인 마련)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농협 - 조합 1,110개 /조합원수 202만명 / 상호금융점포수 4,894 개
수협 - 조합수 91개 /조합원수 15만명 / 상호금융점포수 523개(2026.2.28. 기준)

8) 금융위원회, 2025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2025.12.22.)
- 관계부처(참석)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9) '24년말 기준 168개 (농협 121개, 수협 15개, 신협 7개, 새마을 25개)

10) ① 이사회 정보 공시 확대, 감사 권한을 타 업권수준으로 확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이해상충 검증 강화 등 조합장 견제 강화
② 이사회 및 조합장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역할·책임(R&R) 명확화,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 책임자, 전담조직 설치 등 내부통제 강화
③ 준법제보 익명성 강화, 제보자 보호 강화, 명령휴가·직무분리 확대 등 금융사고 예방 대책 수립 의무화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p.1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¹⁾.

문 의 처
02)6788-5419

11)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수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현황

○ 준법감시 업무 모니터링 현황(중앙회 본부 및 지사무소)

구 분	실시주기	주 요 내 용										
주요 일상업무 사전검토	수시	▸ 규정 개정·대외계약 등 각종 법령 및 제규정의 위배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문서 시행 전에 문제점 등의 시정, 보안 등을 소관부서에 요청 <table><tr><td>2025년</td><td>2024년</td><td>2023년</td><td>2022년</td><td>2021년</td></tr><tr><td>367건</td><td>360건</td><td>352건</td><td>347건</td><td>372건</td></tr></table>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367건	360건	352건	347건	372건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367건	360건	352건	347건	372건								
임직원 자기점검	분기	▸ 점검대상 : 전체 임직원 (사내 인트라넷 팝업창 이용) ▸ 설문내용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자율점검										
부서별 자율점검	매월 분기	▸ 점검대상 : 각 부서 및 지사무소 ▸ 점검내용 : 공통업무(월별) 및 부서별 고유업무(분기별)										
자금운용 임직원 모니터링	분기	▸ 내부통제규약 제17조 등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운용임직원의 유가증권 보유현황 및 매매내역 점검										
법인카드 모니터링	매월	▸ 심야사용 및 사적사용 등 특이거래 위주 집중 점검 <table><tr><td>2025년</td><td>2024년</td><td>2023년</td><td>2022년</td><td>2021년</td></tr><tr><td>806건</td><td>858건</td><td>802건</td><td>711건</td><td>410건</td></tr></table>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806건	858건	802건	711건	410건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806건	858건	802건	711건	410건								
계약사무 모니터링	분기	▸ 주요 수익계약 상대방에게 본회 임직원 부패행위 여부점검 <table><tr><td>2025년</td><td>2024년</td><td>2023년</td><td>2022년</td><td>2021년</td></tr><tr><td>87건</td><td>89건</td><td>86건</td><td>88건</td><td>79건</td></tr></table>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87건	89건	86건	88건	79건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87건	89건	86건	88건	79건								
지사무소 현지점검	분기	▸ 점검내용 : 본부 및 지사무소 자율점검 이행실태 현지점검 <table><tr><td>2025년</td><td>2024년</td><td>2023년</td><td>2022년</td><td>2021년</td></tr><tr><td>8건</td><td>11건</td><td>8건</td><td>11건</td><td>17건</td></tr></table>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8건	11건	8건	11건	17건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8건	11건	8건	11건	17건								
외부강의 등 신고이행실태 점검	반기	▸ 점검내용 : 청탁금지법상 신고기한 등 준수여부 점검 - 신고기한·사례금 기준 준수여부 등										

※ 그 밖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 추진 중

구 분	'25년	'24년	'23년	'22년		구 분	'21년
종합청렴도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 평가체계 변경	청렴도	3등급
청렴제감도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시책평가	3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 평가체계 변경 : (이원화) 청렴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 → (일원화) 종합청렴도

○ 내부통제기준 현장점검

년 도	점검대상	점검결과 위반사항 및 현지조치 실시
2 0 2 1	지역본부	○ 일부 법인카드 전표 사용자 실명 미기재하여 지도 완료
	지역본부	○ 인장관리대장 미비치하여 지도 완료
	지역본부, 지역공판장 지역공판장	○ 인장관수대장에 인계인수 등록 누락하여 지도 완료
	· 지적사항 없음 - 지역본부 등	
2 0 2 2	지역공판장	○ 일부 법인카드 전표 사용자 실명 미기재하여 지도 완료
	지역가공물류센터	○ 인장관리대장 미비치하여 지도 완료
	지역사업소	○ 업무 인계인수 대장 미비치하여 지도 완료
	지역어선안전조업국	○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증빙서류 미비하여 지도 완료
	지역본부	○ AIS시스템 법인카드 전산등록 미비로 전산등록 완료
	지역어선안전조업국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협의서 미비로 지도 완료
	· 지적사항 없음 - 지역공판장 등	
2 0 2 3	지역본부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의 개정 전 양식 사용으로 지도
	지역공판장	○ 법인카드모니터링 시스템의 법인카드 관리개수(3장)와 실제 보유개수(2장) 불일치로 시스템 등록 완료
	지역어업안전조업국, 지역사업소	○ 업무인수인계 대장 서명 누락 ○ 일부 법인카드 전표 사용자 실명 미기재하여 지도 완료
	지역본부	○ 7월말 기준 가수금 계정 잔액 △75,107원 - 점검자료 제출시 계정과목 선택 실수로 가수금 잔액을 인지하여, 정당계정과목으로 정정 회계 처리 완료
	연구실	○ 인장관수대장 미비치로 지도 완료
	본부	○ 업무용계좌 출금대장 미사용으로 지도 완료 ○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 받은 카드 시스템 등록 완료

년 도	점검대상	점검결과 위반사항 및 현지조치 실시
		○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에 적요를 미기재하여 지도 완료 ○ 고유업무 체크리스트 항목 중,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 정비 요청
	본부	○ 준수대상 법규목록 리스트 최신화 요청 ○ 인장관수대장 미보유로 지도 완료
2 0 2 4	지역 물류센터	○ 교육관리대장에 일부 직원 주민번호 노출 - 폐기 및 주민번호 마스킹 처리 완료 ○ 청렴이행계약서 구양식 사용중으로 지도 ○ 점검일 기준 가수금 223,573원 - 업체별 이용료 과다납입건 → 다음 납부일자에 가수금 차감 또는 5년후 잡수의 처리하기로 함
	지역본부	○ 인장 관수자가 변경 사항 미반영하여 시정 완료 ○ 업무용 통장잔액이 “0” 원이 아닌 경우 다소 발생 - 출장이 잦은 지부의 특성으로 미리 입금처리, 규정상 자계좌의 잔액은 0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주지시킴
	지역어선안전조업국	○ 청렴이행계약서 과거 양식 사용중으로 지도 완료 ○ 가지급금계정잔액 △1,359,568,854원 - 내부거래 상계로 가지급금 합계는 “0” 원임을 확인 - 본부 담당자에게 해당건에 대해 전달 후 조치 완료
	본부	○ 보유 법인카드와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내역 불일치하여 등록 완료
	지역공판장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개정 전 양식 사용하여 지도
	지역물류센터	○ 해지한 법인카드 전산상 삭제 조치 완료 ○ 고유업무 체크리스트 항목 중,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 정비 요청
	지역어선안전조업국	○ 업무용 계좌 출금 대장 미작성으로 작성 지도 ○ 유효기간 만료된 법인카드 전산 삭제 조치 완료
	지역본부	○ 고유업무 체크리스트 항목 중,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 정비 요청
	· 지적사항 없음 : 지역사업소 등	
	지역어선안전조업국	○ 기간만료 법인카드 삭제 및 신규 법인카드 전산등록 요청

년 도	점검대상	점검결과 위반사항 및 현지조치 실시
2 0 2 5	지역공판장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의 개정 전 양식 사용으로 지도
	본부	○ 업무용 통장잔액 적정성 점검시, 전자결제 수수료 관련 일부계좌의 잔액이 당일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계좌 포함 일부계좌에 대해 잔액정리를 수시로 할 것을 지도함.
	본부	○ 업무용계좌 잔액 적정성 점검시 잔액 정리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지도 및 추가 점검함. ○ 전산에 미등록한 카드는 바로 전산 반영토록 조치. ○ 인장보관상태 점검시 직원이 인장을 보관·관리하여 대상자 변경 조치 하였음.
	지역공판장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의 개정 전 양식 사용으로 지도
	지역본부	○ 계약사무 모니터링 미신고건에 대해 신고조치 완료 ○ 부서장 업무용 계좌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미이용으로 알림서비스 등록 완료함
	지역어선안전조업국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의 개정 전 양식 사용으로 지도
	지역어선안전조업국	○ 고유업무 체크리스트 항목 중,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 정비 요청
	· 지적사항 없음 : 지역어선안전조업국	

자료: 수협중앙회